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희망자 신청절차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등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제외자 중 검사회망자 신청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5조의4 및 별지 제103호서식)

입영판정검사 제외자가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4 신설)에 따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

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영 제18조의3 신설)에 따라 통지서 서식을 마련함.

다. 재신체검사 통지대상에 입영판정검사 7급자 추가 및 서식 개선(안 제21조,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귀가증 교부 및 재신체검사 통지 대상자에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7급자 등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라.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사항 통보서식 지정 및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현재의 병역처분 통보서를 활용하여 입영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및 신체검사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서식 개선(안 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입영부대 신체검사 비대상 안내 등(별지 제18호서식), 입영여비 계좌
입금 추가 등(별지 제18호의2서식), 입영판정검사 일자 연기(별지 제1
03호의2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영 제18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3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입영판정검사 신청) 영 제18조의5제8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희망하는 입영판정검사일자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17조제3항, 영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병역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9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14조의3제7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25조제2항 · 제26조제1항 · 제2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이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대리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지내역	검사 일시	년 월 일(시 분)
	검사 장소	○○병역판정검사장(○○시·도 ○○시·군·구 ○○읍·면·동)

「병역법」 제1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 병역법 제14조의3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검사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입영부대에 입영할 수 없습니다.

☞ 병역판정검사장 오시는 길 ☜

” 약 도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귀하께서는 입영(소집)하기 전 현역병 복무 또는 군사교육소집 적합여부를 검사를 위해 입영판정 검사를 받으실 대상이며, **입영판정검사** 참석 시 지침물을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내용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된 것) ※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된 나라사랑 카드
기술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만 해당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질병을 앓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용 진단서 ◦ 수술 등 기록지 사본 ◦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방사선필름 등) ◦ 병무청 홈페이지에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 첨부 폐지질환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짜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 병역이행일 연기
 - 정해진 장소 및 일시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의 발생하였거나 악화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 복무 및 군사교육소집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비지급 안내

- 입영판정검사 여비는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 카드”라 함)의 결제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비가 지급 되는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영판정검사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처분(○○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앞쪽)

신체검사일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 (입영) 판정 신체 검사 사항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시력(맨눈)		혈압(mmHg)			
	cm	kg			좌	우	수축기	이완기		
	색각	안과	내과		외과					
					일반·흉부·신경		정형·성형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혈액형	
	병 리 검 사									
	간기능		간 염		소변검사			혈당검사		
	AST	ALT	B형	C형	혈뇨	단백뇨	당뇨	Glucose	HbA1c	
	혈구검사(CBC Count)					현미경검사(혈뇨 또는 단백질 '이상'일 경우)				
WBC	RBC	HB	PLT		M-WBC		M-RBC			
병역 처분 등	신체등급					병역처분				
	학력					재학연기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참 고 사 항

- ※ 병역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날 귀하의 메일(나라사랑메일 등)로 보내드리며, 받지 못한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조회·출력하거나 파일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뒷면의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에는 역종별 병역복무내용, 병리검사 참고치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

안내사항

연령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병역 (입영) 판정 검사	19세	20세부터 35세까지 (기피자등은 37세까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0세까지	45세까지
		현역병 입영대상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	예비군 복무	예 비 군 추가편성	전시 병역의무 기간연장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전 시 군 로 소 집		
		전시군로역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전 시 군 로 소 집	
		병역면제	병 역 제 외			

역종별 병역복무 내용	역 종 별	복 무 내 용			복무기간
	현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하여 결정된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육군 : 18개월 해병 : 18개월
	현역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5주(군사교육)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근무			해군 : 20개월 공군 : 21개월
	보충역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및 행정 분야 지원업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다만,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			보충역 : 21개월
	대체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			36개월

병리검사 참고치	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염	AST	정상 : 0 ~ 40(IU/L)	간염검사 (보균여부)	B형 간염	정상 : 음성	
		ALT	정상 : 0 ~ 41(IU/L)		C형 간염	정상 : 음성	
	소변검사 (신장, 방광)	단백뇨	정상 : 1+>		혈당검사 (당뇨병)	Glucose (혈당)	정상(공복) : 74 ~ 106mg/dl
		혈뇨	정상 : 적혈구 0 ~ 4개 * 현미경 고배율 검사			HbA1c (당화혈색소)	정상 : 4~6% * 혈당 126이상 검사 실시
	신장기능검사 등 5종		병무청 홈페이지-나만의 누리집-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				

혈액형검사는 '모름'으로 표시한 경우만 검사 ※ 미검사자는 본인진술내용 표기

유의사항

1.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7조의2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3. 재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다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는 이 통보서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사항으로 변경되고, 일부 과목만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종전의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가 표시됩니다.
4.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1~3급을 판정받을 경우 당초의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유지합니다.
5. 신체등급판정(입영판정검사 결과 및 신장·체중 제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병역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8.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소집 대상자는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소집)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현역입영대상자 중에서 입영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다음해 5월 중 입영일자를 결정해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며 홈페이지와 ARS(1588-909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대학교·고교 재학생(등록금 납부자, 휴학생 포함)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되며, 대학교 재학생이 입영하려는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연기 사항(기간 등)은 병역판정검사 받은 다음 날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10. 병역판정검사 시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 받은 후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입영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 뒤쪽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관계
주소	
입영부대	입영일시
모이는 장소	

「병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입영일 연기원 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재신체검사원)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기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입영하시더라도 입영 후 군 부대 신체검사서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귀가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3. 예비수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뒷면 “예비수령 및 반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여비지급 금액/시기 : 입영여비 원(입영 후 5일 이내)

여비지급 방법 : 계좌입금(단, 병무청에 등록계좌가 없어서 아래 “우체국방문 수령대상”에 √ 표시된 사람은 우체국에서 수령)

통지번호 _____ 입영여비 영수증		통지번호 _____ [] 입영여비 계좌입금대상 [] 입영여비 우체국방문 수령대상						
성명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입영일		성명						
입영부대		생년월일						
금액		입영일/부대						
◆ 유의사항 여비를 찾으신 후 입영하지 못한 경우 입 금정보 "보내는 분"에 반드시 본인 이름을 적은 후 아래 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반납계좌 우체국 000-000-0000000 (본인 보관용)		여비지급기간						
		취급국일부인						
		금액	십만	만	천	백	십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취급국일부인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 보관용)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입영 시 유의사항

1.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기술자격 또는 면허취득자는 그 자격 또는 면허증 원본이나 사본을 지참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3. 입영 시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단정하게 하시고, 복장은 간소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합니다. 부대 주변에서 판매하는 세면가방, 세면도구, 군번줄, 고무줄, 바느질세트, 양말, 볼펜, 손톱깎이, 군인수첩, 전투화 깔창, 상비약 등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대 주변에서 구입한 불필요한 사제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만,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진단서나 처방전과 함께 지참이 가능합니다.
5. 입영 후 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훈련기간 중 지급되는 봉급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니 입영 시 현금을 지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라사랑카드에 소액(1~2만원) 입금 후 입영은 가능(귀가 등 유사시 필요)
6. 재학생은 입영으로 인한 휴학(일반휴학에서 군 입영휴학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입영하시기 바라며, 개인소지 휴대전화의 일시정지(군입대 사유), 명의변경 및 인터넷 사이트(유료) 해지는 입영 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본 통지서 복사본으로 활용 가능)
7. 복직보장 안내(「병역법」 제74조): 고용주 등은 병역의무자가 군 입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입영기일 연기 등 안내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영기일 연기 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재난구호, 행방불명
- 대학(원)입학시험 응시, 각 군 모집시험 응시 및 선발
- 국외출국(대기) 등

○ 보충역, 전시근로역 사유 등

- 보충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 전시근로역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제출안내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청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영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

※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영 시 병무청 진단서, 수술기록지, 방사선 필름 등을 지참하시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 참고하게 됩니다.

※ 다만,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현역의 특기분류 및 부대배치

- 신병 군사특기 분류는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최적의 특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부대배치는 개인별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분류하여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사청탁의 유효를 받거나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www.army.mil.kr/unitarng
- 입대전 육군 복무관련 궁금한 사항은 육군본부 홈페이지 육군복무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비수령 위임장

○ 입영여비를 아래 사람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위임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자(병역의무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대리 수령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관계: 연락처(☎) :

대리수령자는 신분증 지참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

○ 앞쪽 하단 "우체국방문 수령대상"란에 √ 표시된 사람의 입영여비는 지급기간 동안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입영통지서(앞쪽 서식), 신분증 지참
※ 여비 지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문의(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하단 "계좌입금대상"에 √ 표시된 사람은 병무청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비입금계좌를 등록(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누리집)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여비 지급액은 주소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기 또는 가사사정으로 입영하지 못할 경우 여비를 찾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이미 찾으신 경우에는 앞쪽의 "여비를 받았을 때"에 적힌 유의사항에 따라 찾으신 여비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소집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 뒤 쪽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회복무요원 소집	<input type="checkbox"/> 군사교육소집
성명	생년월일	
주소/업체 소재지		
복무기관/업체명		
소집일시	군사교육소집기간	
소집부대(장소)		

「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통지번호 _____ 여비를 받았을 때 (영수증)		통지번호 _____ 여비를 찾으실 때 <input type="checkbox"/> 계좌입금 <input type="checkbox"/> 우체국 제출	
성명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소집일		성명	
소집부대		생년월일	
금액		소집일/부대	
◆ 유의사항 여비를 찾으신 후 입영하지 못한 경우 입금정보 "보내는 분"에 반드시 본인 이 름을 적은 후 아래 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계좌 우체국 000-000-0000000		여비지급기 간	
		금액	십 만 천 백 십 일 만
(본인 보관용)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우체국 보관용)		영수인 (서명 또는 인)	
		취급국일부인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군사교육소집 시 유의사항
 1. 소집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관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지참이 가능합니다.
 3.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므로 부대 주변에서 판매하는 세면도구, 군번줄, 고무줄, 바느질세트, 양말, 볼펜, 손톱깎이, 군인수첩, 전투화 깔창, 상비약 등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대 주변에서 구입한 불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4. 소집 시 복장은 간소복(운동화는 가급적 흰색)에 3cm 스포츠형 머리로 해 주시고, 퇴소 시 예비군복, 군화 등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훈련 중 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도 과도한 금액은 불필요하니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필요한 금액 정도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휴직을 하고 소집 등이 된 사람이 복무를 마치면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복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그 편입이 취소됩니다.

소집일 연기 등 안내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집일 연기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행방불명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 전시간로역 편입 사유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출원안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집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 소집 후 7일 이내 소집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보충역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되고, 교육훈련 중 질병 등의 사유로 훈련이 곤란한 사람은 퇴영 조치됩니다.
 - ※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 시 병무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방사선 필름 등을 지참하시면 소집부대 신체검사에 참고하게 됩니다.
 - ※ 다만, 지방병무청에서 입영관정검사를 받았거나 입영관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소집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비수령 위임장

입영여비를 아래 사람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위임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자(병역의무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대리 수령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관계: 연락처(☎) :

대리 수령자는 신분증 지참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

- 앞쪽 하단 "여비를 찾으실 때"의 "우체국 제출"란에 √ 표시된 사람의 소집 여비는 지급기간 동안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 ☞ 소집 통지서(앞쪽 서식), 신분증 지참
 - ※ 여비 지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문의(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하단 "여비를 찾으실 때"의 "계좌입금"란에 √ 표시된 사람은 병무청에 등록된 계좌로 여비가 입금됩니다. 여비입금 계좌를 등록(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누리집)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기 또는 가사사정으로 입영하지 못할 경우 여비를 찾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이미 찾으신 경우에는 앞쪽의 "여비를 받았을 때"에 기재

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구분	[] 재신체검사	[]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체검사 일시

신체검사 장소

「병역법」 제14조의3 및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준비사항	재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주민등록증, 병역증, 필기구, 기타 질병에 대한 증명자료 등
참고사항	※ 질병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신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1. 수술(입원)한 경우 : 수술(입원)기록지, CT필름, X선필름 등 2.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의 경우 : 검사기록지 3. 장기간 치료한 경우 : 치료기록지 4. 뇌전증, 정신병의 경우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투약기록지, 치료(입원)기록지 등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병적지	
	주소	

신체검사 일시

신체검사 장소

수령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병역법」 제14조의3 및 제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따른 ([]재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년 월 일장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본인 또는 통지서의 대리수령인은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통지서를 대리수령한 사람은 이를 본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3.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와 이 통지서를 대리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우선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학생 입영·소집(취소), 입영·소집시기 변경: 1일
국외체제자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입영·소집시기 변경: 2일

구 분	[]우선 병역판정검사 [] 입영판정검사 []재학생 입영·소집(취소) []국외체제자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입영·소집시기 변경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통지서 수령인	본인과의 관계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기타 ()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우선 병역판정검사 신청 [] 입영판정검사 신청	[]국외출국(예정)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타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희망일 :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 신청	[]입영 희망 시기 : 월 []언제라도 좋다	
[]입영 ·소집 대상자	학적사항 ※ 입영·소집 신청자 공통	학교 학과 학년(재학·휴학·퇴학·졸업)	
	[]재학생 입영·소집 신청	년 [] 분기 [] 월 []언제라도 좋다	
	[]재학생 입영·소집 신청 취소	[대학(교) 년 재학, 복학] 학업계속	
	[]입영·소집시기 변경 신청	년 분기 월(을) 년 분기 월(으로)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8조의4·제126조·제12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우선 병역판정 검사	국외취업자	국외여행 허가사항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없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 증명서	없음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없음
	기타	관계 증명서류	없음
입영판정검사를 원하는 사람		없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1.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2.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대상자란에 √표시를 한 후 우선 병역판정검사 신청, 입영판정검사 신청·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 신청 중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적습니다.
3. 입영·소집 대상자는 입영·소집 대상자란에 √표시를 한 후 공통사항인 학적사항란에 해당 내용을 적고 재학생 입영·소집 신청, 재학생 입영·소집 신청 취소, 입영·소집시기 변경 신청 중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입영·소집 신청자 유의사항
 - 가. 입영·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소집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취소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입영·소집시기 변경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이미 입영·소집이 통지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영·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소집시기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소집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즉시
입영·소집일 연기: 2일

구 분	[]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 입영·소집일 연기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통지서 수령인	본인과의 관계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현역 모집병(육군, 해군, 해병, 공군)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 예비군(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 []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예비군대체복무소집 대상자 [] 기타 ()	
[]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사유	연기 후 희망일
[] 입영·소집일 연기	입영·소집일 연기 사유	입영부대(복무기관) 재 입영 희망일(모집병만 작성)

「병역법」 제14조의3제6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일자 연기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병무용 진단서	없음
	국외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	없음	여권등록 정보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위독·사망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졸업·수료(예정)증명서, 수험능력시험접수증, 학원수강증 등 그 사실 확인(증명서)	없음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 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	시험접수증 사본	시험응시 또는 1차 시험 결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사실확인(증명)서	없음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일자연기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이 어려운 사람	일반진단서	없음
	재감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장 발행 사실확인서	없음
	공무원, 공공단체 채용 및 면허·자격시험, 승진시험	응시원서 접수증(합격증) 사본	없음
	국가기관, 공공단체, 주요 기관 산업체 교육 중인 사람	교육 인사 명령서 사본	없음
	시설 직업훈련기관 교육 중인 사람	재원 사실 확인서	없음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 결혼·부모 회갑 또는 배우자의 출산	청첩장, 초청장 또는 의료기관 (일반)진단서	없음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자	참가 확인서	없음
주요 업무 수행	주요 업무 수행확인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1.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2.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관에 √표시를 한 후 그 내용을 적습니다.
3. 입영·소집대상자는 입영·소집일 연기관에 √표시를 한 후 입영·소집일, 입영부대(복무기관), 연기 사유, 재입영희망일(모집병만 작성)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 병무청장은 <u>법 제14조제1항</u>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1조(귀가증 등) ① (생 략)</p> <p>② <u>영 제26조제1항</u> 및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p>	<p><u>제13조의2(입영판정검사 통지서)</u> 영 제18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p> <p>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 ----- <u>법 제14조제1항</u> 및 <u>법 제14조의3제5항</u>----- -----.</p> <p><u>제15조의4(입영판정검사 신청) 영 제18조의5제8호</u>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희망하는 입영판정검사 일자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1조(귀가증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영 제17조제3항, 영 제26조제2항</u> ----- ----- ----- -----.</p>